

공사도급계약서

도급인 _____ (이하 "갑")과 수급인 _____ (이하 "을")은 아래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명	_____
공사장소	_____
공사기간	착공 20____년 ____월 ____일 ~ 준공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대금	금 _____ 원정 (부가가치세 _____)

제1조 (공사 범위)

을은 다음 범위의 공사를 설계서와 첨부 견적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제2조 (대금 지급)

갑은 공사대금을 다음 단계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 (자재와 시공)

을은 견적서에 적힌 자재를 사용하며, 다른 자재로 바꾸려면 같은 등급 이상으로 하고 갑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제4조 (추가·변경 공사)

공사 범위의 추가나 변경은 갑과 을이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한 후 시행하며, 합의 없이 시행한 추가 공사의 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체상금)

을이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마다 공사대금의 1,000분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의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제외한다.

제6조 (안전과 손해)

을은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소음·분진 관리에 책임을 지며, 공사로 인하여 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 (준공 검사)

을은 공사를 마치면 갑에게 알리고, 갑은 7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을이 보완한다.

제8조 (하자보수)

을은 준공일로부터 _____개월 동안 발생한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을이 보수 요청을 받고 14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갑은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기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해제)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여 준공일까지 완성할 가능성이 없으면 갑은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한 견적서와 도면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구분	갑 (도급인)	을 (수급인)
성명·상호	_____	_____ (대표 _____)
생년월일·사업자번호	20____년 ____월 ____일	_____
주소	_____	_____
연락처	_____	_____

갑 (도급인) : _____ (인)

을 (수급인) : _____ (직인)